

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5년 6월 23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5월 29일, 고성미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2차 행정재경위원회(2025년 6월 23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이 일부개정(대통령령 제35366호, 2025.3.4. 시행)됨에 따라,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용어의 혼용과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용어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)
- 계약 체결 시 홈페이지 공고 사항을 강화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함(안 제9조)

- 제3자 위탁이 가능한 경우의 법령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함(안 제9조의2)
-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대한 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리·감독 규정을 정비함(안 제1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이 2025년 3월 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,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
 - 안 제2조 제5호에서는 “제3자 위탁”이란 정의를 신설함.
 ※ 이는 상위법령에서 ‘재위탁’을 사무의 일부를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반면, 서울시와 자치구 조례에서는 ‘재위탁’을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같은 용어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함에 따라 해석에 혼선 발생으로 “제3자 위탁”이란 새로운 정의 신설
 - 안 제9조에서는 계약 체결 시 홈페이지 공고 사항을 구체화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함.
 - 안 제9조의2는 제3자 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,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법령상 근거와 구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.
 - 안 제16조에서는 위탁의 취소 외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

공개 규정을 신설함.

1. 계약의 취소

- 의 의 :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였던 것처럼 효력을 없애는 것
- 주요사유 : 착오, 사기, 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
- 효 과 :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며, 원상회복 의무 발생
- 적용법조 : 민법 제109조~제110조(의사표시의 하자)

2. 계약의 해제

- 의 의 :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
- 주요사유 : 상대방의 계약위반 (불이행, 지체 등)
- 효 과 : 계약 성립 시점으로 소급하여 계약 효력이 없던 것으로 처리, 원상회복 의무 발생
- 적용법조 : 민법 제544조~제545조

3. 계약의 해지

- 의 의 :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장래를 향해 종료시키는 것
- 주요사유 : 주로 계속적 계약(임대차, 고용 등)에서 사용
- 효 과 : 계약 성립 후의 법률관계는 유효하나, 장래를 향해 효력 소멸,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없음
- 적용법조 : 민법 제689조(임대차의 해지 등), 제733조(사용대차의 해지 등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과 자치법규의 해석 일치를 통해 실무 혼선을 방지하고,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며, 구청사무의 무분별한 제3자 위탁을 제한하고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수탁기관에 대한 사후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개정 의의가 있음.
-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